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1. 관련

- 가. 교육부 보도자료(2020.11.01.)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분야 관련 사항’
 -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 나. 학사운영팀(서울)-1912(2020.10.15.)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2020-2학기 학사운영 추가조치 방안(6차)’

2. 공통사항

- 가. 아래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계속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상황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천안캠퍼스 및 대학원의 경우 본 학사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여 시행 가능함.

3.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 서울캠퍼스 학부, 2020.11.02. 기준, 정부의 단계별 발표에 따라 즉시 적용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론 교과목	대면수업 기반 융합수업 (수강인원 50명 초과 분리참여, 50명 이하 자율참여)			전면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준수
실습 교과목 (10인 미만 포함)				원격수업 원칙, 융합수업 허용	
융합수업 시 대면참여 조편성 인원기준	강의실 수용인원 70% 이내 편성 (최소 1m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50% 이내 편성 (최소 1m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30% 이내 편성 (최소 2m 이상)	10인 미만 으로 편성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10인 미만 강좌의 경우 별도의 조편성 없이 대면수업 진행 가능				
고사방법	e-Campus 상호작용(퀴즈/발표/토론 등) 활용 권고, 대면고사 허용(조편성 인원기준 및 고사 방역지침 준수)			e-Campus 활용 원칙(10인 미만은 대면고사 허용)	e-Campus 활용 준수
	기말고사 기간 2주간(15~16주차) 확대 시행 (단, 모든 보강은 해당 교과목 기말고사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공통사항: 과제/결과물로 대체 가능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II 유형 으로 확대 적용 (단, 기존 상대평가 예외 과목은 종전 규정 적용)			전체 교과목을 상대평가 예외 로 적용	
일괄보강주간 운영	공 휴일 일괄(지정) 보강주간(15주차) 시행			일괄(지정) 보강주간 미시행	
비 고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의 경우도 각 단계에 따라 정규학기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주1. 성적평가 방법 및 보강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강 후 2주차 시작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결정하며 해당 학기 종료까지 계속 적용함(사전예고 필요).

주2. 2020-2학기의 경우 기 결정 사항에 따라 일괄(지정) 보강주간 미시행을 적용함.

주3. 융합수업: 강의실 수용인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요일별/격주별 등으로 대면수업 참여 및 미참여 학생을 분리하여 팀 편성 * 미참여 학생에게는 원격수업의 방법(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e-Campus 별도 제작 등)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대면수업 참여 팀의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불안감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으로 해당 주차/요일의 수업을 대신할 수 있음).